

분당마르페 주야간보호 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 및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.
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

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(보호자)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.

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,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(일반, 경감, 의료, 기초수급권자)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

상세비용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

아울러 우리 센터는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드리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수시로 모집합니다.

연락처 : 센터장 010-4506-9126

http://blog.naer.com/bundang_marpe

분당마르페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(일부)

제8조(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)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계약기간 -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나. 계약목적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- 다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 - 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 - (2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.
- 라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)
- 마.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,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, 금액은 유첨과 같다.

[별표 1]

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4.1.1.이후)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*18시 이후는 야간으로 20%가산됨 *일요일,공휴일은 30%가산(평일기준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39,810	36,850	34,020	32,470	30,920	30,92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3,360	49,420	45,620	44,070	42,500	42,50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6,360	61,480	56,760	55,210	53,640	53,640
10시간 이상 ~13시간 이하	73,110	67,720	62,570	61,000	59,450	53,640
13시간 초과	78,400	72,630	67,100	65,540	63,990	53,640

※ 상기 3시간 미만 이용액은 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수가의 80%를 산정한다.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※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9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9%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

○ 주야간보호 비급여항목 급여비용(원)

(30일 기준)

구 분	비 용	산 출 근 거	금 액
식재료비	1회 3,500원	1일2회*3,500*30일	210,000원
간식비	1회 1,000원	1일2회*1,000*30일	60,000원
이미용비	0		0
기 타	실비		실비

본 계약서 9조 1항의 내용에서와 같이 수급자가 월 15회 이상 이용하여 등급별 재가 월 한도액의 최대 120%를 초과시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그 내용에 동의하며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.

2024년1월1일

분당 마르페주야간보호센터